< 경희대학교 빅데이터응용학과 동아리 'CODE' 회칙 >

개정일: 2023년 5월 2일

작성자: 2023년 1학기 회장단 및 임원진

회장: 송정현

부회장: 이채영

총무부

*부장 : 오동근

*부원: 이병철

기획부

*부장: 김채원

*부원: 임현우

홍보부

*부장: 박시현

*부원 : 김태성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동아리 연합회에 소속된 단체로서 "CODE"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 CODE는 데이터 사이언스 동아리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, 능력을 고양하고 데이터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부원) 휴학 등의 개인 사유로 활동 중지 요청을 한 부원이 다시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활동 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 4조 (부원의 권리 및 의무)

제 1항 CODE의 부원은 동아리 회칙에 따라 동아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감사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.

제 2항 CODE의 부원은 각종 동아리 모임, 활동,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
제 3항 CODE의 부원은 회장단 선거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 4항 CODE의 부원은 정당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.

제 5항 CODE의 부원은 본 동아리 제반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

제 6항 CODE의 부원은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제 **7**항 **CODE**의 부원은 본 동아리의 목적을 저해하는 회원에 대해 회원 자격 박탈을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.

제 8항 CODE의 부원은 동아리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9항 CODE의 모든 부원은 회칙 및 세칙에서 정한 회비와 각종 행사 참여시 임원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행사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10항 CODE의 부원은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간의 예의와 품위를 유지해야한다.

제 11항 본 동아리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 12항 본 동아리의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제 5조 (부원의 징계)

제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회칙에 명시한 부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부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회장단 및 임원진의 의결을 통해 제명될 수 있다.

제 2항 본조 제1항에 의해 제명된 자는 다시 본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없다.

제 6조 (부원의 탈퇴 및 재가입)

제 1항 동아리원은 회장단에 탈퇴 사유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.

제 2항 임원진 회의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된 탈퇴 사유의 경우 1회까지 재가입이 가능하다.

제 3항 위의 정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 2장 임원진

제 1절 통칙

제 7조 (구성, 지위, 책임)

동아리 운영 위원은 회장단과 임원진으로 정한다. 회장단은 회장,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임원진은 총무부장, 기획부장, 홍보부장 및 각 부 부원으로 구성한다. 각 구성인원은 해당 부분에 있어서 회장단 부재 시 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.

제 8조 (임기)

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하며 연임이 가능하다.

제 9조 (사퇴)

제 1항 임원이 사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단 및 각 부 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.

제 2항 임원이 사퇴한 경우 14일 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 10조 (탄핵)

제 1항 임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회칙을 위배한 경우 회장단 및 임원진은 임원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.

제 2절 임원진의 임무 및 권한

제 11조 (회장)

제 1항 회장은 CODE의 전반적인 활동을 책임진다.

제 2항 회장은 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집행하고, 동아리 연합회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3항 회장은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

- 정기모임에 관한 사항
- 동아리 내부 행사 및 공지에 관한 사항
- 타 동아리 및 대학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
- 동아리 담당 교수님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
- 모든 동아리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동아리 연합회에 관한 사항
- 임원진 회의 개회 및 안건에 관한 사항

제 12조 (부회장)

제 1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.

제 2항 부회장은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- 정기모임 출석에 관한 사항
- 임원진 회의 기록에 관한 사항
- 부원 명단에 관한 사항
- 동아리 연합회에 관한 사항

제 13조 (총무부)

제 1항 총무는 CODE의 회비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진다.

제 2항 총무는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- 활동 장소 대여에 관한 사항
- 뒤풀이 장소 예약, 메뉴 선정, 공지에 관한 사항
- 회비 및 각종 행사비 관리에 관한 사항
- 각종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
- 동아리 징계 공고에 관한 사항
- 회계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
- 그 외 회장 및 부회장 보좌에 관한 사항

제 14조 (기획부)

제 1항 기획부장은 기획부를 대표하는 역할로 활동한다.

제 2항 기획부장은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

- 스터디 활동 진도분할에 관한 사항
- 동아리 활동 진행도 관리에 관한 사항
- 친목활동 확인 및 장려에 관한 사항
- 대내외 행사 계획,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MT에 관한 사항
- 기타 행사 기획에 관한 사항
- 그 외 회장 및 부회장 보좌에 관한 사항

제 15조 (홍보부)

제 1항 홍보부장은 홍보부를 대표하는 역할로 활동한다.

제 2항 홍보부장은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- 동아리 공식 SNS 계정 관리에 관한 사항
- 동아리 온라인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
- 동아리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, 게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그 외 회장 및 부회장 보좌에 관한 사항

제 3장 활동

제 16조 (정기모임의 운영)

제1항 동아리 활동 무단 불참은 허용하지 않으며, 불참시 페널티 1회가 주어진다.

제 2항 동아리 활동 무단 지각 및 조퇴는 허용하지 않으며, 2번 누적 시 페널티 1회가 주어진다.

제 3항 지각과 불참이 허용되는 경우는 천재지변, 법정 감염병, 경조사, 학과 수업, 기타 부득이한 사유이며 해당 사항은 회장단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4항 세미나 무단 불참 및 지각/조퇴와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개회 예정 시각으로부터 15분 이내 : 출석
- 개회 예정 시각으로부터 15분 이후 ~ 60분 이내 : 지각

- 개회 예정 시각으로부터 60분 이후 : 결석
- 세미나가 끝나기 전에 퇴장 : 조퇴

제 5항 동아리 포트폴리오 무단 불참 및 지각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작성기한 3일 내 작성 : 무단 지각
- 작성기한 3일 이후: 무단 결석

제 17조 (징계)

제 1항 총무부장은 회의에서 징계 반영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2항 회장은 징계 심사 판단의 증거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3항 주의 및 경고는 해당 징계를 받은 달로부터 12개월 후 말일이 지나면 차례로 삭제된다.

제 18조 (제명)

제 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아리연합회 회의에 해당 동아리의 제명 안건을 상정한다.

- 페널티 3회가 누적된 경우
- 동아리 회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진 경우
- 기타 동아리 명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동아리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때

제 2항 제명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회장은 제명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서면 혹은 구두로 통보한다.
- 회장은 해당 사항을 임원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.
- 해당 동아리원은 질의응답과 소명의 발언을 할 수 있다.
- 의결과정은 동아리연합회 내부 규정에 따른다.
- 제명의 의결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19조 (공결)

제 1항 공결로 인정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. 단, 위임장 제출이 인정된 대리인에게는 공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.

제 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를 회장에게 알린 경우 공결로 인정한다.

- 직계존속 및 친•인척(6촌 이내)의 경조사
-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
- 정부 또는 정부에 정식 등록된 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시험
- 동아리의 연간 행사 중 중요한 일정이 대표자회의 일시와 중복될 때
- 기타 임원진이 인정한 경우

제 4장 자산운용

제 20조 (원칙)

제 1항 본 동아리는 유무형의 동산, 부동산, 권리 등을 소유할 수 있으며, 이를 본 동아리의 자산이라 한다.

제 2항 본 동아리의 회장단과 임원진은 자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.

제 3항 본 동아리는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 본 동아리 회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1조 (부원의 회비 납부)

제 1항 총무는 회비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한다.

제 2항 입회비는 한 학기 4000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 2년간의 회비는 연초에 1회씩 총 2회 납부하며, 총무부장은 자체적으로 납부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제 22조 (회비의 관리)

제 1항 CODE의 재정은 회비와 회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수익금과 그 외의 찬조금, 보조금, 기부금 등으로 한다.

제 2항 CODE의 재정은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부가 관리한다.

제 3항 CODE의 재정 운용의 목적은 동아리의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, 1차적으로 동아리 사용 비품 구매, 2차적으로 동아리 행사 운영, 3차적으로 모임 비용 충당으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정한다.

제 4항 재정의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학기 말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, 전액을 다음학기의 회비로 이월한다.

제 5항 총무부에서 회비 납부금 외의 비용을 수금하여 집행을 한 경우 그 증빙 서류를 **3**일 내에 공고해야 한다.

제 6항 선배님들의 개별 찬조 혹은 기부금은 출처를 명확히 기입하고 동아리 회비 카드에 쌓아놓는다.

제 7항 CODE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인다.

- 동아리 세미나 상품 구입비
- 동아리 비품 구입비
- 각종 행사 준비 비용(MT, 일일호프 등)

제 8항 총무는 매달 재정 결산을 동아리 회계장부에 기입하고 활동 인원 단체 카톡 방에 공시해야 하며, 전체 결산 보고서를 종강총회에 제출해야 한다.

제 1절 회장단 선거

제 23조 (선거)

제1항 본 선거는 회장단 선출에 관한 선거이다.

제2항 본 선거는 비밀·직접 선거의 원칙을 따른다.

제 24조 (시기)

제1항 선거일은 특별한 내·외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매 학기 종강총회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항 재선거는 제26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2주 내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5조 (재선거·보궐선거)

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.

- 당 학기 회장단 후보가 없는 때
- 선거의 당선인이 없는 때
- 선거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
- 선거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
- 제2항 회장단이 탄핵 및 사퇴 등의 이유로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**10**일 이내에 임원진 회의를 열어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.

-

제 26조 (입후보)

제1항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종강총회 7일 전까지 회장단에게 알리고, 회장단은 이를 즉시 공고해야 한다.

제 27조 (당선의 기준)

제1항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집행부로 당선된다.

제2항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,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.

제 2절 임원진 선발

제 28조

제1항 각 부서의 부장은 회장단의 논의 하에서 임원진 중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발한다 제2항 각 부서의 부원은 동아리원 내에서 지원을 받은 후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.

-		